# 동대구2차 비스타동원 입주자모집공고문

■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준하는 견본주택 OPEN 운영하오니 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동대구2차 비스타동원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견본주택 관람과 사전예약제를 통한 안심모델하우스로 운영합니다. 견본주택을 직접 관람하기 보다는 분양관련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e모델하우스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예약제 실시

견본주택을 방문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동대구2차 비스타동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관람이 가능하오니 고객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1899-1139)

■ 대구광역시 방역 지침에 따른 안심 모델하우스 운영

- 동대구2차 비스타동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전예약제와 홈페이지 (http://www.dongwonapt.co.kr/hyodong)로 대체 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가.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나. 견본주택 입장 전 방명록 작성 및 신분확인에 불응할 경우 / 다.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라.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전신소독기를 통한 전신소독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등 추후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안심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관람 인원 조정 등으로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1899-1139)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 하시어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2020.07.1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수성구 제외)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7)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5항 및「대구광역시 고시」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7) 현재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한 성년자에게 우선공급하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으로 청약신청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해외거주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관련문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011호 (적용시점 : '19.07.25일 이후 청약신청분 부터 적용)

• 해외거주 인정기준 ①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입국 후 7일 동일국가 재출국시 계속 해외 거주로 봄) ②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 해당기간(①,②) 동안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불가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 적용례 ①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가능

②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③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시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 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복당첨자 처리방법**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반영, 3월 16일 공고분부터 적용)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 발표일 같은 주택(다른 주택 포함)에 대하여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단 공급 유형을 달리 신청한 경우[신청자(특별공급)+세대원(일반공급)] 또는 각각 일반공급 신청 시에는 모두 당첨으로 인정 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본인이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또한 본인과 세대원이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각각 특별공급 신청하게 되면 선당첨은 인정되나 후당첨은 부적격(특별공급 1회 제한)됩니다. 다만 각각 공급유형을 달리(특별공급+일반공급)하여 신청하거나 일반공급을 신청한 경우는 모두 당첨으로 인정 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 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제한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단, 본 아파트는 승인권자(대구광역시 동구청)의 요청에 따라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ngwonapt.co.kr/hyodong)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2020.02.21.이후 부동산실거래신고 거래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3월 13일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공급되는 공급금액 6억이상 아파트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구 분 | 특별공급<br>(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br>노부모부양)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동・호 발표) | 당첨자 검수<br>(계약체결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 계약체결 |
|---|---|---|---|---|---|---|
| 일 정 | 7월 27일(월) | 7월 28일(화) | 7월 29일(수) | 8월 4일(화) | 8월 5일(수) ~ 8월 14일(금) | 8월 17일(월) ~ 8월 19일(수) |
| 방 법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사 견본주택 방문<br>(10:00 ~ 17:00) | 당사 견본주택 방문<br>(10:00 ~ 17:00) |
| 장 소 | ▪ 사업주체 견본주택<br>▪ 한국감정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한국감정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한국감정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한국감정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견본주택 방문접수<br>-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br>※ 검수접수 과열시 일정 및 운영은 변동될 수 있음. | ▪ 견본주택<br>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18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 및 마감재 목록표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나,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인한 이의를 사업주체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 - 28590호(2020.07.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637-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5층 12개동 총 627세대 중 일반공급 405세대

[특별공급 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43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43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83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구분 | 50 | 59 | 76 | 84 | 합계 |
|---|---|---|---|---|---|
| 총세대수 | 86 | 111 | 218 | 212 | 627 |
| 일반 | 83 | 71 | 179 | 72 | 405 |
| 조합 | 2 | 39 | 38 | 139 | 218 |
| 임대 | - | - | - | - | - |
| 보류지 | 1 | 1 | 1 | 1 | 4 |

**■ 입주시기 : 2023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공급대상 및 면적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일반분양 세대수 |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부양 | 계 | | |
| 민영 주택 | 2020000871 | 01 | 50.9838 | 50 | 50.9838 | 15.6814 | 66.6652 | 35.4051 | 102.0703 | 27.2849 | 83 | 9 | 9 | 17 | 3 | 38 | 45 | 2 |
| | | 02 | 59.9746 | 59 | 59.9746 | 19.0063 | 78.9809 | 41.6487 | 120.6296 | 32.3255 | 71 | 8 | 8 | 15 | 3 | 34 | 37 | 8 |
| | | 03 | 76.5403 | 76 | 76.5403 | 22.8858 | 99.4261 | 53.1526 | 152.5787 | 40.6934 | 179 | 18 | 18 | 36 | 6 | 78 | 101 | 14 |
| | | 04 | 84.9887 | 84 | 84.9887 | 25.7455 | 110.7342 | 59.0196 | 169.7538 | 45.3216 | 72 | 8 | 8 | 15 | 3 | 34 | 38 | 16 |
| | 합 계 | | | | | | | | | | 405 | 43 | 43 | 83 | 15 | 184 | 221 | 40 |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주택형 | 타입 | 공급 세대수 | 동호 구분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분양금액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 | | | 1차 | 2차 | 1차 (10%) | 2차 (10%) | 3차 (10%) | 4차 (10%) | 5차 (10%) | 6차 (10%) | 입주지정일 (30%)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2020-09-16 | 2021-02-19 | 2021-05-10 | 2021-09-10 | 2022-01-10 | 2022-05-10 | 2022-10-10 | 입주시 |
| 50.9838 | 50 | 83 | 109동~112동 1,2라인 | 1~2 | 2 | 141,163,000 | 161,237,000 | 302,400,000 | 10,000,000 | 20,240,000 | 30,240,000 | 30,240,000 | 30,240,000 | 30,240,000 | 30,240,000 | 30,240,000 | 90,720,000 |
| | | | | 3~4 | 9 | 141,163,000 | 163,237,000 | 304,400,000 | 10,000,000 | 20,440,000 | 30,440,000 | 30,440,000 | 30,440,000 | 30,440,000 | 30,440,000 | 30,440,000 | 91,320,000 |
| | | | | 5층이상 | 72 | 141,163,000 | 168,237,000 | 309,400,000 | 10,000,000 | 20,940,000 | 30,940,000 | 30,940,000 | 30,940,000 | 30,940,000 | 30,940,000 | 30,940,000 | 92,820,000 |
| 59.9746 | 59 | 71 | 101~104동 4라인 | 1~2 | 6 | 167,241,000 | 184,159,000 | 351,400,000 | 10,000,000 | 25,140,000 | 35,140,000 | 35,140,000 | 35,140,000 | 35,140,000 | 35,140,000 | 35,140,000 | 105,420,000 |
| | | | | 3~4 | 8 | 167,241,000 | 187,159,000 | 354,400,000 | 10,000,000 | 25,440,000 | 35,440,000 | 35,440,000 | 35,440,000 | 35,440,000 | 35,440,000 | 35,440,000 | 106,320,000 |
| | | | | 5층이상 | 18 | 167,241,000 | 194,159,000 | 361,400,000 | 10,000,000 | 26,140,000 | 36,140,000 | 36,140,000 | 36,140,000 | 36,140,000 | 36,140,000 | 36,140,000 | 108,420,000 |
| | | | 101~104동 1라인 | 1~2 | 6 | 167,241,000 | 181,159,000 | 348,400,000 | 10,000,000 | 24,840,000 | 34,840,000 | 34,840,000 | 34,840,000 | 34,840,000 | 34,840,000 | 34,840,000 | 104,520,000 |
| | | | | 3~4 | 7 | 167,241,000 | 183,159,000 | 350,400,000 | 10,000,000 | 25,040,000 | 35,040,000 | 35,040,000 | 35,040,000 | 35,040,000 | 35,040,000 | 35,040,000 | 105,120,000 |
| | | | | 5층이상 | 26 | 167,241,000 | 188,159,000 | 355,400,000 | 10,000,000 | 25,540,000 | 35,540,000 | 35,540,000 | 35,540,000 | 35,540,000 | 35,540,000 | 35,540,000 | 106,620,000 |
| 76.5403 | 76 | 179 | 101~103동 2,3라인 | 1~2 | 7 | 210,534,000 | 224,866,000 | 435,400,000 | 10,000,000 | 33,540,000 | 43,540,000 | 43,540,000 | 43,540,000 | 43,540,000 | 43,540,000 | 43,540,000 | 130,620,000 |
| | | | | 3~4 | 11 | 210,534,000 | 226,866,000 | 437,400,000 | 10,000,000 | 33,740,000 | 43,740,000 | 43,740,000 | 43,740,000 | 43,740,000 | 43,740,000 | 43,740,000 | 131,220,000 |
| | | | | 5층이상 | 50 | 210,534,000 | 231,866,000 | 442,400,000 | 10,000,000 | 34,240,000 | 44,240,000 | 44,240,000 | 44,240,000 | 44,240,000 | 44,240,000 | 44,240,000 | 132,720,000 |
| | | | 104동~108동 2,3라인 | 1~2 | 13 | 210,534,000 | 228,866,000 | 439,400,000 | 10,000,000 | 33,940,000 | 43,940,000 | 43,940,000 | 43,940,000 | 43,940,000 | 43,940,000 | 43,940,000 | 131,820,000 |
| | | | | 3~4 | 20 | 210,534,000 | 230,866,000 | 441,400,000 | 10,000,000 | 34,140,000 | 44,140,000 | 44,140,000 | 44,140,000 | 44,140,000 | 44,140,000 | 44,140,000 | 132,420,000 |
| | | | | 5층이상 | 78 | 210,534,000 | 237,866,000 | 448,400,000 | 10,000,000 | 34,840,000 | 44,840,000 | 44,840,000 | 44,840,000 | 44,840,000 | 44,840,000 | 44,840,000 | 134,520,000 |
| 84.9887 | 84 | 72 | 106동~108동 4,5,6라인 | 1~2 | 9 | 234,479,000 | 245,921,000 | 480,400,000 | 10,000,000 | 38,040,000 | 48,040,000 | 48,040,000 | 48,040,000 | 48,040,000 | 48,040,000 | 48,040,000 | 144,120,000 |
| | | | | 3~4 | 18 | 234,479,000 | 247,921,000 | 482,400,000 | 10,000,000 | 38,240,000 | 48,240,000 | 48,240,000 | 48,240,000 | 48,240,000 | 48,240,000 | 48,240,000 | 144,720,000 |
| | | | | 5층이상 | 12 | 234,479,000 | 252,921,000 | 487,400,000 | 10,000,000 | 38,740,000 | 48,740,000 | 48,740,000 | 48,740,000 | 48,740,000 | 48,740,000 | 48,740,000 | 146,220,000 |
| | | | 105동 4,5,6라인 105~108동 1라인 | 1~2 | 9 | 234,479,000 | 247,921,000 | 482,400,000 | 10,000,000 | 38,240,000 | 48,240,000 | 48,240,000 | 48,240,000 | 48,240,000 | 48,240,000 | 48,240,000 | 144,720,000 |
| | | | | 3~4 | 13 | 234,479,000 | 249,921,000 | 484,400,000 | 10,000,000 | 38,440,000 | 48,440,000 | 48,440,000 | 48,440,000 | 48,440,000 | 48,440,000 | 48,440,000 | 145,320,000 |
| | | | | 5층이상 | 11 | 234,479,000 | 256,921,000 | 491,400,000 | 10,000,000 | 39,140,000 | 49,140,000 | 49,140,000 | 49,140,000 | 49,140,000 | 49,140,000 | 49,140,000 | 147,42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이상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 표시 안내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50.9838 | 59.9746 | 76.5403 | 84.9887 | 비고 |
|---|---|---|---|---|---|
| 약식표기 | 50 | 59 | 76 | 84 |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설치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했으며, 향후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이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방법, 구비서류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 군인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1세대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청약신청 가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구 분 | 내 용 |
|---|---|
| 1회 한정/<br>자격요건/<br>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무주택<br>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br>※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br>-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br>-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br>※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br>가. 주택공급신청자<br>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br>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청약자격<br>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br>-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비고 |
|---|---|---|---|
|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 200만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 |
|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 300만원 | |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 400만원 | |
| 모든 면적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청약HOME(www.applyhome.co.kr)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됨.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함<br>・인터넷 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br>・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br>・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모두를 무효처리함.<br>・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br>・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br>・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br>・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일(2018.12.11)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br>・일반(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과거에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br>・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 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br>・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br>・특별공급 인터넷 접수에 따라 특별공급 서류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날에 맞추어 제출하셔야 합니다.<br>※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 구분 | | | 50 | 59 | 76 | 84 | 합계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 5 | 4 | 10 | 5 | 24 |
| | 국가유공자 등 | | 2 | 2 | 5 | 2 | 11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1 | 1 | 1 | 1 | 4 |
| | 중소기업 근로자 | | 1 | 1 | 1 | - | 3 |
| | 북한이탈주민 | | - | - | 1 | - | 1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9 | 8 | 18 | 8 | 43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 우선공급(75%) | 13 | 12 | 27 | 12 | 64 |
| | | 일반공급(25%) | 4 | 3 | 9 | 3 | 19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3 | 3 | 6 | 3 | 15 |
| 합계 | | | 38 | 34 | 78 | 34 | 184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43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구분 | 관련법규 | 해당기관 |
|---|---|---|
| 국가유공자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제대군인 등 |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

・ 대상세대 : 43세대

| 구분 | | 50 | 59 | 76 | 84 | 합계 |
|---|---|---|---|---|---|---|
| 기관추천 | 장애인 | 5 | 4 | 10 | 5 | 24 |
| | 국가유공자 등 | 2 | 2 | 5 | 2 | 11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1 | 1 | 1 | 4 |
| | 중소기업 근로자 | 1 | 1 | 1 | - | 3 |
| | 북한이탈주민 | - | - | 1 | - | 1 |
| 소계 | | 9 | 8 | 18 | 8 | 43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해당기관 추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해당주택 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 거주하는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추천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4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됩니다.[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분양권전매 요청 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 대상세대 : 43세대

| 구분 | 50 | 59 | 76 | 84 | 합계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9 | 8 | 18 | 8 | 43 |

###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시 동점자 처리(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 포함)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br>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8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 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대구 6개월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공급계약)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분양권전매 요청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 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자료로 준용합니다.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는 전년도 계속하여 직장에 근무,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금년도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인 경우, 전년도 정상적인 소득과 근무개월수 및 출산휴가 기간(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면 소득합산)합산하여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 구분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5,554,983원 | 6,226,342원 | 6,938,354원 | 7,594,083원 | 8,249,812원 | 8,905,541원 |
|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6,665,980원 | 7,471,610원 | 8,326,025원 | 9,112,900원 | 9,899,774원 | 10,686,649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 ~ 120%이하 | 5,554,984원 ~ 6,665,980원 | 6,226,343원 ~ 7,471,610원 | 6,938,355원 ~ 8,326,025원 | 7,594,084원 ~ 9,112,900원 | 8,249,813원 ~ 9,899,774원 | 8,905,542원 ~ 10,686,649원 |
|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 ~ 130%이하 | 6,665,981원 ~ 7,221,478원 | 7,471,611원 ~ 8,094,245원 | 8,326,026원 ~ 9,019,860원 | 9,112,901원 ~ 9,872,308원 | 9,899,775원 ~ 10,724,756원 | 10,686,650원 ~ 11,577,203원 |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대상세대 : 83세대

| 구분 | | | 50 | 59 | 76 | 84 | 합계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 우선공급(75%) | 13 | 12 | 27 | 12 | 64 |
| | | 일반공급(25%) | 4 | 3 | 9 | 3 | 19 |
| | 소계 | | 17 | 15 | 36 | 15 | 83 |

・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휴직기간이 없는 경우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br>・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① 재직증명서(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br>②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① 해당직장<br>② 세무서 / 해당직장 |
| | 신규취업자 / 금년도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①, ② 해당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①, ②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않는 자<br>(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① 재직증명서 ② 총급여액 및 근무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①, ②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 ① 세무서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①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① 세무서 ② 등기소 |
|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①, ② 해당직장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①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br>※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직장<br>※국민연금관리공단 |
| 무직자 | | 비사업자확인각서<br>※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견본주택비치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1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랄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적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대상세대 : 15세대

| 구분 | 50 | 59 | 76 | 84 | 합계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3 | 3 | 6 | 3 | 15 |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주택건설 지역(대구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한자 또는 경상북도 거주자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겨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 특별공급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해당자) | | | |
| 공통서류 | 0 |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견본주택 비치, 한국감정원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계약시 무주택 서약서 작성 |
| | 0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감정원 '청약Home'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br>[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한국감정원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0 | | 주민등록증 | 본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br>※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 0 |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
| | 0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 | 0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 |
| | 0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필수<br>발급기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 | 0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 다자녀 특별공급 | | 0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0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 0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0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0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0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상세"로 발급<br>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0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등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심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0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br>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0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 0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br>(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 0 | | 소득증빙서류 |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br>(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 | | 0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0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

| | | | | | |
|---|---|---|---|---|---|
| | | | |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0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0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br>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 | 0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노부모부양<br>특별공급 | 0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세부내역 포함하여 발급 |
| | | | | 자녀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 | | | |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 | 0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0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직계비속 |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
| 제3자<br>대리인<br>신청시<br>추가사항 | 0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0 |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0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0 |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0 | | 인장 | 대리인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1통 필요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 일반공급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table>
<tr><td>신청자격 요건</td><td colspan="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7)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br>(단, 미성년자 중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7)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신청자에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td></tr>
<tr><td rowspan="3">순위별 자격요건<br>(민영주택)</td><td>거주구분</td><td>순위</td><td>신청구분</td><td>신청자격 및 청약 관련예금</td></tr>
<tr><td rowspan="2">대구광역시<br>및<br>경상북도</td><td>1순위</td><td rowspan="2">전주택형</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br>1)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br>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br>4)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자</td></tr>
<tr><td>2순위</td><td>-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분<br>-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td></tr>
</table>

| | |
|---|---|
| 청약신청<br>유의사항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br>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br>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br>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br>・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br>・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br>・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br>・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전체에 대하여 중복 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로 처리합니다.<br>・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br>・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br>・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br>[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투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br>・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br>・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br>・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br>① 청약예금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br>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br>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br>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br>(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됩니다.(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가능)<br>・본 주택의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br>・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 구분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
|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 400만원 | 1,000만원 |
| 모든 면적 | 1,000만원 | 500만원 | 1,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5.12.29)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 구분 | 신청자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br>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br>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 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br>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br>- 외국인 직계존속<br>-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br>※ 2020.0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br>-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합니다.<br>- 30세 미만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br>-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주민등록표등본<br>(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br>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br>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br>※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주민등록표등·초본<br>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br>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br>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br>- 출입국사실증명원<br>- 개정일(2018.12.11.)이후 분양권·입주권을 계약한 직계존속 (배우자포함)은 가점산정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함.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청약통장<br>(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 청약신청 접수방법

•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수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선수위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대구광역시 고시」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한 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합니다.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

## ■ 유의사항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 가입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등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국 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PC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br>**[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 (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 / 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 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 구비사항 |
|---|---|---|
| 일반<br>공급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br>•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br>※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제3자 대리신청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br>-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전산)인지란」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오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Ⅲ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구분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20.07.27(월)<br>(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br>(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사업주체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일반공급 | 1순위 | 2020.07.28(화) 08: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대행은행 창구 | |
| | 2순위 | 2020.07.29(수) 08:00~17:30 | |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감정원 '청약Home' 인터넷(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불가)허용 됨. (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 ~ 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Ⅳ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일정 및 계약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당첨자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 • 일시 : 2020.08.04.(화)<br>•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Home' 앱에서 개별조회<b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br>- 2020.08.17.(월) ~ 08.19(수) 10:00 ~ 17:00<br>• 장소<br>- 견본주택(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18) |
| 일반공급 | 1순위 | | |
| | 2순위 | | |

※ 당첨자 명단은 한국감정원 '청약Home'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 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 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 됨.

※ 당첨자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 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계약체결일정시 견본주택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계약체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ngwonapt.co.kr/hyodong) 및 당첨자들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 구분 | |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0.08.04(화) ~ 2020.08.13(목). (10일간) |
| 인터넷 |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br>-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0.08.0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br>•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br>•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br>•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br>•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br>-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br>-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br>*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br>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br>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br>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br>•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신청자가 대구광역시(6개월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br>•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br>•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br>•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br>-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br>*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br>-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br>•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

| | |
|---|---|
| |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br>•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br>•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br>•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br>•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br>•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br>•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br>•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br>•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세대원[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2)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는 주택소유로 봄)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주택법」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 하여야한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1일 전에 주택을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함.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①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⑤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⑴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⑵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⑶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⑷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혹은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 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 V 계약체결

### ■ 구비서류

| 구분 | | 서류유형 | | 계약 시 구비 사항 |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본인 계약시 | 공통 | 0 |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 | 0 |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본인만 가능, 대리인 계약불가),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br>※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 | | 0 | |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
| | | 0 |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br>※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 | | 0 | | - 주민등록표등본 1통[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및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0 | | - 주민등록초본[전입발생일,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0 | | - 청약자 및 세대원 출입국사실증명원,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확인 / 발급기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 | | 0 | | - 가족관계증명서1통(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0 |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 | | | 0 |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인자에 한합니다.) |
| | | | 0 |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br>-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 0 |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인자에 한합니다.) |
| | | | 0 | -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br>[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 | | | 0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1부) |
| | | | 0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0 |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 0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 | | 0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 | | 0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 0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br>-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합니다.)<br>-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br>-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견본주택에 비치)<br>-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할 경우,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2005.06.28.「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2019.08.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6개월 내 기간 중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사업주체에게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인지 여부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 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 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할 경우, 사업주체에서 판단하여 한국감정원에 당첨자명단에서 제외 요청할 예정이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이 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도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단, 부적격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로 판단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 체결을 미선택한 세대에 대하여는 설계상 기본품목으로 시공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발코니확장 계약, 플러스옵션 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합니다.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좌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분양대금 납부계좌 | 우리은행 | 1005-403-997287 | 효동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br>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2동503호 홍길동 → 10205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중도금·잔금 납부계좌는 상기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는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일(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 할 경우, 사업주체로 환불신청서(사업주체 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 예정입니다.

## ■ 중도금 납부 및 대출 알선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 (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금액을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대출 신청건에 한하여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 주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일부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 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기타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학교,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시 시행자, 시공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시 시행자 및 시공자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및 이자 부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짐.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시행자가 중도금 대출은행 알선 불가시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계약시 회차, 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 양도받은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 보증(부담금대출보증, 사업비대출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분양보증등)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 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자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 입주예정일 : 2023년 03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키즈카페,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실내골프연습장,독서실) 등

##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등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의 선택사항으로 추가 선택 품목의 금액 및 물품등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임의 결정한 금액이며, 분양승인대상(분양가상한제 비대상)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안내**

- 발코니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계약체결 전에 아래의 계좌로 공급 계약금액을 입금하여야하며, 상기 지정 예금계좌를 제외한 어떠한 방법(견본주택, 본사 및 공사현장에 직접 납부하는 등)으로도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예금계좌 외 납부를 할 경우 발코니확장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발코니확장비용(중도금, 잔금)은 납부지정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입금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좌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우리은행 | 1005-803-997247 | (주)동원개발 | - |

- 발코니확장비용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102동 503호 홍길동 → 1020503홍길동(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구분(공고상 타입) | 50 | 59 | 76 | 84 | 비고 |
|---|---|---|---|---|---|
| 발코니 확장금액 | 7,800,000 | 12,800,000 | 13,600,000 | 15,900,000 | |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등 공사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 등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등 공사세부품목내역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및 시공상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비확장 요청이 없을시에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하였으며,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시 창호손잡이 열림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일러가 세탁기/건조기 후면이나 측면에 위치할 경우 점검 및 수리를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발생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바로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여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시공자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안방 발코니 샤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안방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도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및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 시스템에어컨**

| 구분 | 1안 | | | | 2안 | | | |
|---|---|---|---|---|---|---|---|---|
| | 50㎡ | 59㎡ | 76㎡ | 84㎡ | 50㎡ | 59㎡ | 76㎡ | 84㎡ |
| | 거실+침실1 | 거실+안방 | 거실+안방 | 거실+안방 | 거실+<br>침실1,2 | 거실+안방1<br>+침실1,2 | 거실+안방1<br>+침실1,2 | 거실+안방1<br>+침실1,2 |
| 시스템<br>에어컨 | 3,000,000 | 3,000,000 | 3,200,000 | 3,500,000 | 3,700,000 | 5,100,000 | 5,500,000 | 5,900,000 |
| 비고 | 거실 : 13평<br>침실1 : 6평<br>(실외기 2.5마력) | 거실 : 13평<br>안방 : 6평<br>(실외기 2.5마력) | 거실 : 15평,<br>안방 : 8평<br>(실외기 : 3마력) | 거실 : 18평,<br>안방 : 8평<br>(실외기 : 4마력) | 거실 : 13평<br>침실1 : 6평<br>침실2 : 5평<br>(실외기 3마력) | 거실 : 13평<br>안방1: 6평<br>침실1,2 : 5평<br>(실외기 4마력) | 거실 : 15평<br>안방1: 8평<br>침실1,2 : 5평<br>(실외기 5마력) | 거실 : 18평<br>안방1: 8평<br>침실1,2 : 5평<br>(실외기 5마력) |
| 천장형 시스템<br>에어컨 실내기 모델명 | 제조사명 | 18평 | 15평 | 13평 | 8평 | 6평 | 5평 | |
| | 삼성전자 | AJ072MB1PBC1 +<br>PC1BWSK3N | AJ060MB1PBC1 +<br>PC1BWSK3N | AJ052MB1PBC1 +<br>PC1BWSK3N | AJ032MB1PBC1 +<br>PC1NWSK3N | AJ023MB1PBC1 +<br>PC1NWSK3N | AJ020MB1PBC1 +<br>PC1NWSK3N | |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확장옵션 선택시 설치가능하며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추후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결이형 총2개소의 냉매 매립배관이 발코니확장 선택시 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전용 콘센트를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공사비용은 옵션 선택시 공사비용에 차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중문 추가 설치비

(단위: 원, 부가세포함)

| 주택형 | 품목명 | 공급금액 | 비고 |
|---|---|---|---|
| 전타입 | 중문 설치 | ₩1,100,000 | 상세 사항은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방 하이브리드 전기쿡탑(인덕션2구+전기1구) 설치비

(단위: 원, 부가세포함)

| 주택형 | 업체명 | 모델명 | 품목 | 공급금액 | 비고 |
|---|---|---|---|---|---|
| 전타입 | (주)하츠 | IH-360 | 하이브리드 전기쿡탑 (인덕션2구 + 전기1구) | ₩600,000 | 상세 사항은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방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설치비

(단위: 원, 부가세포함)

| 주택형 | 품목명 | 공급금액 | 비고 |
|---|---|---|---|
| 50 |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br>(주방 아일랜드 상판 포함) | ₩600,000 | 상세 사항은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59 | | ₩1,000,000 | |
| 76 | | ₩1,050,000 | |
| 84 | | ₩1,200,000 | |

## ■ 옵션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옵션품목은 계약체결 전에 아래의 계좌로 공급 계약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상기 지정 예금계좌를 제외한 어떠한 방법(견본주택, 본사 및 공사현장에 직접 납부하는 등)으로도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예금계좌 외 납부를 할 경우 옵션품목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세대별 옵션품목비용(중도금, 잔금)은 납부지정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계좌의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금하시기 바라며,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입금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좌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옵션 납부계좌 | 우리은행 | 1005-903-993911 | (주)동원개발 | - |

- 옵션품목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 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 503호 홍길동 → 1010503홍길동)**
- 옵션품목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3조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적용품목 및 범위

| 구분 | 품목 | 적용범위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
|---|---|---|---|---|
| 일괄선택(개별선택불가) | 바닥재 | 각실,거실,주방,현관<br>발코니 | 바닥마감재(지정마루판 / 타일), 걸레받이 | 바닥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br>배수슬리브 |
| | 벽 | 각실,거실,주방,현관 |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 일체(타일 등) 거실 아트월 및 패널, 걸레받이, 신발장 및 가구류 | 단열+석고보드+미장, |
| | 천장 | 각실,거실,주방,현관 | 천장지(초배지포함),반자돌림(몰딩포함),우물천장, 인테리어마감 | 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
| | 조명기구 | 각실,거실,주방,현관 | 부착형 조명기구일체(직부등, 매입등,센서등 일체)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홈네트워크 월패드 |
| | 욕실 | 공용욕실, 부부욕실 | 위생기구(양변기,비데,세면기,욕조,샤워기등) 수전류,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훼, 욕실타일, 욕실선반, 욕실인테리어(젠다이 및 상판, 스위치, 콘센트, 거울등 마감일체), 욕실폰, 재료분리대, 코킹, 악세사리일체 | 방수(바닥,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br>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통신배관배선 |
| | 주방 | 주방 | 상부장,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가스쿡탑 포함), 수납장, 액세서리, 벽타일, 렌지후드, 주방수전, 씽크볼,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주방액정TV | 설비배관, 전기, 통신배관/배선, 주방배기덕트 |
| | 문 | 각실 출입문 | 문틀, 문짝, 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디지털도어록 |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방화문 및 일반도어록 |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공고상 타입) | 50 | 59 | 76 | 84 |
|---|---|---|---|---|
| | 50.9838 | 59.9746 | 76.5403 | 84.9887 |
| 마이너스 옵션 금액 | 16,949,000 | 19,583,000 | 24,220,000 | 26,974,000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시공하는 방식임

※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의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공사는 사용검사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에 착수하시기 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시공 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건축법」제52조,「건축법시행령」제61조,「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품목의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따라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셔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금 납입비율은 일반 분양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발코니확장을 선택할 수 없음(신청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시 주의하시기 바람)

## Ⅶ 기타

### ▣ 유의사항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 공통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상기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단, 이 경우 정산금에 대하여 이자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징구)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 견본주택 안내에 협조하여야 하며, 비협조 시 견본주택 입장 및 관람에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카달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수준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PL창호(프레임, 유리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PL창호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전시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조명,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와 소방감지기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소방법에 따라 세대 내 일부 창호는 소방대진입창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시 소방대진입창 표지가 부착되고 창호의 크기 및 형태, 개폐방식,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조명 및 배선기구의 사양, 수량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개별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계약금, 중도금대출 대환처리 및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설계 변경된 부분을 하자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관협의, 건축심의 및 인가조건(설계변경 포함), 각종인증(예비인증 및 본인증)관련 인증기관 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설계변경 동의 포함)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최상층 세대의 계단의 위치, 단높이, 단넓이, 단폭은 다소 이동 및 변경이 가능하며, 상부층의 사용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 및 마감재와 조경 계획,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급배기 휀, 태양광 집광판, 소화수조 및 기타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시설물 위치 및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철도,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조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집합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실외기 및 환기시설(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옥탑, 측벽, 몰딩, 창틀, 필로티, 공용홀, 동출입구, 캐노피, 지하출입구 등) 및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집적소, 조경 등)의 형태, 마감재 및 색상은 심의 및 법규,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배치 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집적소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청약신청 및 입주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불빛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시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시공사 타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수락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배치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24)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주차장 램프 포함), 보행자에 의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등 수준의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각종 인증 시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 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등본 포함)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로 필히 서면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일부 동의 엘리베이터 홀은 직접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본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아파트 전 평형)이 설치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AI 아파트 서비스는 KT에서 제공합니다. “KT GiGA Genie 홈 IoT” 앱을 통하여 AI 아파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 (스마트폰 통신사 무관)
- AI 아파트 서비스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 시점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 서비스 종료 기간 후에는 KT 요금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 될 수 있음.
- AI 아파트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입주 시 KT에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무상 제공 기간 종료 시점에 자동 해지 됨.
- AI 아파트 서비스 내용은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상품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 될 수 있음.
- KT AI 스피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 인터넷이 설치되어야 하며, IoT 가전 연동을 위하여는 세대 내 WiFi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세대 내 인터넷 및 WiFi는 통신사와 무관하며, 입주자 부담 사항입니다. IPTV 기능은 KT Olleh TV 가입자만 이용 가능.
- IoT 가전 기기는 별도 구매 하여야 하며, IoT 가전 연동 및 Home to Car 서비스는 KT 연동 가능 모델에 한하여 제공 됨
- TV/음악 서비스는 별도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 됨. (Olleh TV, 지니뮤직).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호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도로와 접한 단지내 보도는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입주 후 외부인의 보도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평면도와 마감자재 목록표가 입주자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견본주택 내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 분양공고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사업시행자, 시공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분양사업자와 계약자간의 합의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산지방법원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외부여건

※ 다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준공 이전 및 입주 후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일조권, 조망권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와 단지 주출입구에는 자동차 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동북로, 대구순환선(예정), 대구권광역철도(예정), 대구선, 경부선 등 도로 및 철로의 소음등 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로 이와 인접한 세대(101동, 102동, 103동, 104동)는 조망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확인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발생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등)의 소음 및 진동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 관할 관청 등으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놀이터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설치되는 보도는 향후 공공시설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준공 전 기부채납하고, 토지사용권은 포기합니다.
- 기부채납되는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공공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계획은 행정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지가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고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므로 비행안전구역의 항공기 소음 노출에 의한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하며, 향후 항공기 소음 및 비행안전구역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관련 제한사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부여건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조경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공용부위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및 경관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공조시스템 가동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과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마감재,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건축(경관)심의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추후 관계 인허가청의 협의과정에서 마감재, 색채 및 경관조명이 변경되어 질 수 있으니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앙광장,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는 이용에 의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재활용집합창고,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정차공간은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배면, 측면에 시공될시에는 주차라인 마킹 시공 제외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 및 조경(식재, 시설물)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옥상은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및 건축(경관)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공동주택 지상 42대, 지하 772대 총 814대, 근린생활시설 지상 14대로 총 828대(경차, 장애인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3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에 따라 지하1층 ~ 지하2층, 지하2층 ~ 지하3층 으로 구획될 수 있고 층수 및 주거동의 연결통로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진출입구 2개소입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형주차, 평형주차, 전기차충전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지하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등을 위하여 주차구획 개소, 위치, 타입비율 등의 주차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출입램프)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에는 지하주차장 출입 및 지상차량 출입램프가 설치되며, 또한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형주차, 평형주차, 전기차충전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세대는 단지 내 주차장 및 상가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충분히 이를 숙지하고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색채 및 외부마감재,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협의(경미한 변경신고)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사업주체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램프나 계단, 옹벽, 조경석 쌓기, 자연사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운동공간 및 단지출입구, 지하주차장출입구,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산책로 등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는 곳의 저층 일부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에 따른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에서 쓰레기집적소까지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 지상1층에 쓰레기집적소가 배치되어 쓰레기 차량 출입 및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놀이터, 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은 아파트 법적설치 시설이나 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검사 완료 후 입주자회의 및 관리조약에 의해 공동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은 최상층에 설치된 옥상 구조물에 따라 시야 및 조망에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의 공법, 크기, 위치, 모양, 색상, 마감재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거 주차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3m 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이상으로 설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에 기존 건축물 중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존치하고 있음을 고시하였으며 종교시설인 교회가 존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존치되어있는 기존 교회는 110동 111동 108동과 접하고 있으며, 종교시설로 인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는 설비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설비시설 등의 위치 및 면적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

- 인근학교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효목초등학교 배치 가능, 중학생은 1학교군 내 분산 배치 가능,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내 분산 배치 가능합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과, 053-231-0705)

##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아래 사항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도면 및 착공도면의 단위세대 평면(비확장,확장)은 품질개선을 위하여 도어규격, 위치 및 개폐방향, 벽체길이, 구조, 바닥단차, 걸레받이 마감, 도어 케이싱 규격, 전등규격, 전등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분양홍보를 위한 CG 및 모형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구와 벽체 사이 이격거리 없이 간략히 표현하였음.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 마감재리스트에 제조사가 지정된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급의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시공될 수 있음.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도배지,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일, 석재 등의 경우 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음.
- 내부 마감재(마루, 타일, 도배지 등)는 본 공사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인조대리석과 강화석 등 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음.
- 가구(주방, 일반, 시스템 선반가구), 외부창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천장재, 마루, 온도조절기, 조명, 배선기구 등은 본 공사 시 업체가 선정되어 설치되므로 동등 이상의 유사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음.
- 강마루 바닥재의 경우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 창호의 치수 및 방향, 경량벽체 유무 및 치수, 가구의 배치 및 길이 등이 착공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착공도면을 우선으로 기준하여 시공됨.
- 본 공사 시 타일의 나누기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거실, 아트월, 주방, 욕실, 발코니, 실외기실 등)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세대내 거실의 아트월 설치,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기준 천장고(거실, 주방, 침실)는 2.3m이며 우물천장의 깊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내의 위치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특히 냉장고, 세탁기는 가구 및 세탁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세대 커튼박스의 형태 및 크기,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경량벽체인 경우,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함.
- 단위세대별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내의 온도 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 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됨.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음.(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욕실벽(PD 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홈통은 발코니, 실외기실 또는 PD내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위치 및 수량, 재질, 문양(디자인) 등은 현장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도 배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이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실시공 시 「건축법 시행규칙」[별표5] 건축허용오차(제20조 관련)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결로현상은 입주자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로 및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 등은 금속성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옵션선택시 실외기는 발코니 내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단위세대 타입별로 실외기실 위치 및 크기가 상이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후 세대 내 폴리싱타일 표면의 물기를 즉시 제거해야 하며,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공용부위의 타일 표면에 물기 발생시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가급적 이삿짐 등은 해당동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창호는 층수,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인해 유리의 강도 및 두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바람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되며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기준층 세대로 꾸며져 있으며 층별, 라인별로 천장고 및 출입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해당 평면도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형태 및 크기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진행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추후 본 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의 판단 기준은 사용승인도면에 따르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 하부에 필로티가 설치될 계획(일부 또는 전체)이며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시 자재특성, 품질, 미관 향상, 마감시공 방식 차이에 따라 견본주택 시공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은 바닥난방이 설치됩니다.(양변기/세면기 하부, 샤워부스 내부 및 욕조 하부 제외)
- 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 별로 창호 사양(창틀, 소프트웨어, 유리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시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실제 시공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위치는 타입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내부에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통합(또는 개별)으로 설치되며, 위치 및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 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전항의 경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 ■ 설비 유의사항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착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위치 및 수량, 재질, 문양(디자인) 등은 현장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시 자재특성, 품질, 미관 향상, 마감시공 방식 차이에 따라 견본주택 시공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내부에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통합(또는 개별)으로 설치되며, 위치 및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샤워부스 하부, 욕조 하부, 드레인 하부, 양변기주변, 세면기 하부 등)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 개수대, 가스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악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마감 구배, 장내 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인하여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세대분전반은 법규에 의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관등의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 내 조명기구와 스위치는 직류전원 공급에 의해 동작하는 방식으로 조명기구와 스위치 간 UTP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이로 인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류전원용 조명기구와 위치로의 교체가 불가하므로 계약자는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안방)가 설치됨.(에어컨 옵션 선택 세대 제외), 이외의 실에 에어컨 설치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배관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벽체 내부에는 각종 설비배관(급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이 환기구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환기구의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장치(콘센트 등) 및 LED조명기구 적용 비율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 예정입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디퓨져 위치, 사양, 개소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 배기 방식은 직배기 혹은 공동배기 타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 및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 층 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최상층 발코니 우수 입상관은 지붕층 드레인 위치에 따라 부속을 사용하여 위치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배관공법(층상배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음식물 처리기는 수분배기, 싱크볼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예정이며 설치후 사용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유의사항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입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외벽의 리브(줄눈)형태 및 옥상경관, 형태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주변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 소유주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전시용조명은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7조 적용)

| 구 분 | 적용여부 | 비 고 |
|---|---|---|
| 고기밀 창호 | 적용 | |
| 고효율 기자재 | 적용 | |
| 대기전력 차단장치 | 적용 | |
| 일괄소등 스위치 | 적용 | |
| 고효율 조명기구 | 적용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
| 실별 온도조절장치 | 적용 | |
| 절수설비 | 적용 |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 및 정보통신감리 |
|---|---|---|---|
| 회사명 | (주)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 (주)건축사사무소건일종합기술 | 서한컨설탄트(주) |
| 감리금액 | ₩1,944,211,500- | ₩433,779,540- | ₩380,000,000- |

## Ⅷ 기타 계약자 안내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보증서 발급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분양보증내용**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 02312020-101-0001100호 | ₩ 115,673,60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보존등기일<br>(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주)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구분 | 내용 |
|---|---|

<table>
<tr><td>보증사고<br>(보증약관 제4조)</td><td>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br>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br>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br>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br>4.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br>【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br>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br>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 접수일 등<br>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br>※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td></tr>
<tr><td>보증채무의 내용<br>(보증약관 제1조)</td><td>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br>【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br>【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br>【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br>【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td></tr>
<tr><td>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br>(보증약관 제2조)</td><td>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br>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br>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br>【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br>【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br>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br>【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br>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br>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br>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br>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br>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br>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br>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br>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br>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br>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td></tr>
</table>

| | |
|---|---|
| |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br>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br>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br>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br>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br>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br>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br>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br>【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시행사 | 시공사 |
|---|---|---|
| 상호 | 효동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동원개발 |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55-1, 3층(효목동)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동 9층(민락동, 센텀비스타동원1차) |
| 법인등록번호 | 170171-0022785 | 180111-0029438 |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18**

▣ 분양홈페이지 : http://www.dongwonapt.co.kr/hyodong

▣ 분양문의 : ☎ **1899 – 1139**

※ 본 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